

《경춘선 신내역과 6호선 환승시설 건설에 관한》

위·수탁 협약서

2017. 11. 21

한국철도시설공단
서울교통공사

경춘선 신내역과 6호선 환승시설 건설에 관한 위·수탁 협약서

경춘선 망우~금곡 복선전철 사업 중 “감사원 중재 합의서(2008.11.25) 제5조 제3항”에 의거 “경춘선 신내역과 6호선 환승시설” 건설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과 서울교통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위·수탁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협약의 목적) 본 협약은 “감사원 중재 합의서 제5조 제3항에 의한 6호선 선로 모양변경 등과 환승구조물 건설사업”(이하 “6호선 환승시설”이라 한다)을 시행함에 있어 “공단”과 “공사” 상호 간의 사업범위, 사업비 부담, 사업시행, 시설물의 자산취득·운영·유지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.

제2조(사업 시행 및 사업비 부담) ① 감사원 중재 합의서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“6호선 환승시설”에 대하여 “공단”은 설계를 시행하고 설계시 “공사”와 협의하여 최종 설계성과물을 “공사”에 인계하며, “공사”는 도시철도 시설물 설치에 따라 “6호선 환승시설” 사업을 시행하고 영업개시와 동시에 “공사”에 재산 및 시설관리권이 인계된 것으로 본다.

1. “공단” : 설계, 사업비 부담, 사업 인허가
 2. “공사” : 시공(공사중 인허가 포함), 운영 · 유지관리, 재산 · 시설관리권
- ②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“공단”이 광역철도사업비 등으로 부담하고 “공사”는 공정계획에 따라 “공단”에게 사업비 예납을 요청하여야 한다.

제3조(사업 위치 및 사업 기간) ① 본 사업의 위치는 경춘선 신내역과 환승되는 6호선 신내차량기지 내에서 시행하고, 사업기간은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“6호선 환승시설” 공사가 완료되는 계약기간까지로 하며, “공단”과 “공사”는 “6호선 환승시설” 건설공사가 조기에 완공되도록 상호 노력한다.

② 본 협약 체결 후 사업기간 중 정부의 계획변경, 인허가 및 여건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장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“공단”과 “공사”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4조(위탁 사업의 범위 및 업무 분담) ① 위탁 사업의 범위는 “공단”이 시행한 “6호선 환승시설”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하고, 공사 중 6호선 환승기능 수행을 위한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“공사”는 “공단”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한다. 단, 변경 규모는 경춘선 신내역과 6호선 환승기능 수행을 위한 필요시설 규모로 제한한다. (붙임 사업 위치 및 범위 참조)

② 위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“공단” 과 “공사”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시행한다. 단, 그 이외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“공단” 과 “공사”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1. “공단”의 업무

가. 환승시설 실시계획

나. 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(실시계획 변경)

다. 본 협약에서 정하는 위탁 사업비(국비, 지방비) 납부

2. “공사”의 업무

가. 위탁받은 사업의 공사 발주 및 시공(사업관리)

나. 공사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, 폐기물처리, 지장물 이설 및 원상 복구공사 시행

다. 공사 중 부득이한 경우 설계변경 시행(단, 환승을 위한 필수시설로서 사업비 증액 등 중요사항은 “공단”과 사전 협의시행)

라. 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

마. 공사 중 민원 등 업무처리

바. 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

사. 본 사업으로 준공된 도시철도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·유지관리 등

제5조(관련 법령의 준수) ①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, 「철도안전법」, 「건설기술진흥법」, 「도시철도법」, 「철도건설법」, 「철도건설규칙」, 「장애인 및 교통약자 관련 법률」, 「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」, 「도로법」 등 제반 관련법규와 “공단”과 “공사”의 내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기타 정해지지 않거나 규정이 상이할 경우 “공단”과 “공사”가 협의하여 시행한다.

제6조(사업비의 책정 및 조정) ①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설계결과 공사비 및 시설부대경비(설계비, 감리비, 시설부대비)를 포함한 187억원으로 하고, 사업 완료 후 최종 정산한다. 다만, “공사” 부지 내 6호선 환승시설 설치 공사로서 용지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.

② 사업비는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물가변동, 환승기능을 위한 현장 여건변동,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경우,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은 「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」 및 관련규정에 의거 “공단”과 “공사”가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. 다만, 부득이하게 총사업비 초과 시는 정부, 서울시와 별도 협의 결과에 따른다.

제7조(사업비 납부 및 관리) ① “공사”는 “공단”이 부담하는 사업비의 입금 및 관리 등을 위한 **지급계좌를 “공사”의 명의로**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며, 계좌 개설 후 “공단”에게 통보한다.

② “공사”는 협약 체결 후 사업비(기성금)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“공단”에게 제출하여야 하고, 집행계획에 의거 사업비를 “공단”에게 청구하고, “공단”은 “공사”가 청구한 사업비를 “공사”의 지정계좌에 입금한다.

③ “공단”은 협약 체결 후 “공사”에서 공사 발주(계약) 및 자금(선금,기성) 지급에 차질 없도록 “공사”가 요청한 사업비를 “공사”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

④ “공단”은 제2,제3항의 계획에 따라 “공사”가 신청한 계획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“공사”에게 지급하여야 하며, 기한 내 지급되지 않을 경우에 따른 제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 및 “공사”의 손실에 대하여 면책사유가 없는 한 “공단”이 책임을 진다.

⑤ 본 위탁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“공사”가 별도 개설한 지정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실질 귀속자는 “공단”이 되며, “공사”는 매년 발생한 이자를 12월말 까지 “공단”에게 입금 및 통보하여 “공단”의 회계결산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업의 시행) ① “공사”는 “공단”이 작성하여 상호 협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 이 사업을 수행한다. 단, 사업의 특성상 시스템 선정 등 명확한 설계 반영 및 적용이 힘든 분야는 분야별 사업비 내에서 일부사항에 대해 설계도서를 보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② 본 사업의 건설·운영·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제반 책임은 물론 제3자에게 가한 피해에 대한 책임은 면책사유가 없는 한 “공사”가 진다.

제9조(사업비 집행 및 정산) ① “공사”는 본 사업 추진 중 사업 범위 내 환승시설 기능과 관련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제반 소요비용을 집행할 수 있으나, “공단”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 단, 경춘선 신내역과 6호선 환승시설간 최소한의 환승기능과 관련된 사항으로 제한한다.

② “공사”는 회계연도별로 집행된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“공단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“공사”는 본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준공 내역서와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준공금액을 “공단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“공단”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“공사”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④ “공단”은 준공내역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“공사”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“공사”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⑤ “공단”과 “공사”는 상호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정산잔액에 대하여 반환 및 청구요청을 하여야 하며, 해당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 정산이 어려울 경우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
제10조(재산의 처분 및 시설물의 귀속) ① 본 사업으로 6호선 환승기능을 위하여 차량기지부지 내 새로 설치되는 도시철도 시설물은 감사원 중재

합의서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해당시설을 운영·관리할 “공사”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며, “공단”은 “공사”가 시설물 귀속 등의 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요청 시 “공사”에게 제출한다.

② 본 사업으로 발생한 기존시설물(철거 발생품)은 “공단”에 무상으로 귀속되며, “공단”의 관련규정 및 절차에 의거 물품반납 또는 공사 중 현장에서 매각 처리한다. 다만, 불용품은 공사비(폐기물 처리)에 포함하여 처리한다.

제11조(운영·유지관리) ① 본 사업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“6호선 환승시설” 시설물에 대하여는 “공사”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하고, “공사”가 비용을 부담한다.

② “공사”에서 “코레일”과 환승시설 운영에 관한 협의 시 “공단”은 협조하고 “6호선 환승시설”의 **경춘선 신내역과 통합, 위탁 등 운영** 관련사항은 “공사”와 “코레일”에서 협의하여 시행한다. 다만, **경춘선 신내역과 통합 운영**과 관련된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경우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되, 이견이 있을 경우는 정부, 서울시와 협의결과에 따른다.

제12조(협약의 변경) ① 본 협약사항 중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“공단”과 “공사”가 사전에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한 협의를 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② 본 협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,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“공단”과 “공사”가 협의하여 추가 결정한다.

③ 본 협약 상 중요한 부분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제반 책임을 진다.

제13조(협약의 해지) ① “공단” 또는 “공사”는 상대방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이 협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15일의 이행최고기간을 거친 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“공사”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비를 정산하여 “공단”의 확인을 받아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.

제14조(분쟁의 해결) ① 이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약에 의하여 해결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이 60일 이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「중재법」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.

제15조(협약의 효력) ① 이 협약은 당사자인 “공단”과 “공사”가 협약서에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이 협약의 입증을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“공단”과 “공사”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붙임 : 사업 위치 및 범위.

2017. 11. 2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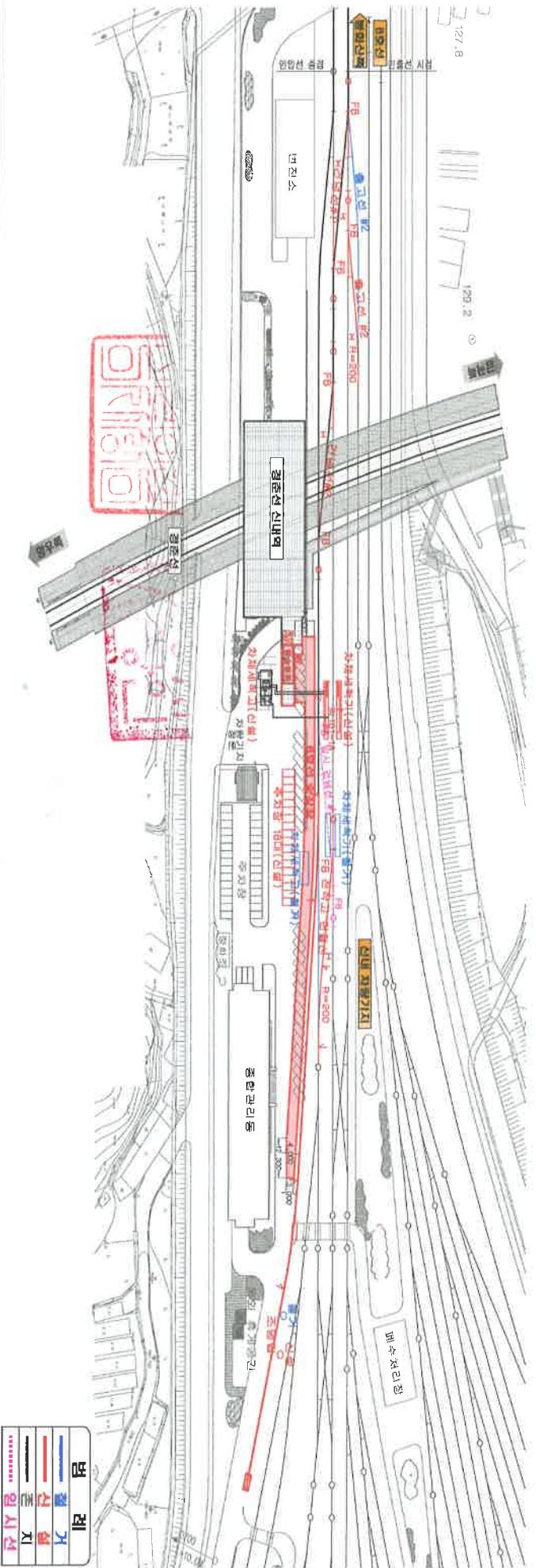
“위탁자” :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(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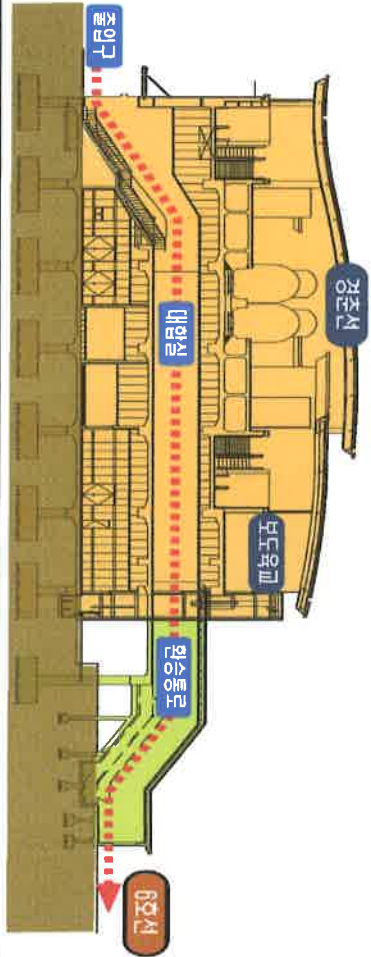
“수탁자” : 서울교통공사 사장 (인)



6호선 환승시설 설치 평면도



경춘선 신내역과 6호선 환승동로 단면도



경춘선 신내역과 6호선 환승시설 평면도

